

대신대학교 상담·취업지원센터 운영규정

제정 2016. 9. 1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신대학교 상담·취업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.)의 직무,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업무) 센터에는 학생의 생활 전반 및 취업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신입생 인성검사 사업
2. 개인 심리검사 및 상담
3. 집단 상담
4. 개인 적성 검사 및 상담
5. 취업 및 진로 상담
6. 이성·결혼·성 상담
7. 학생 생활 제반문제 조사연구
8. 취업특강, 채용설명회, 취업박람회 개최
9. 취업률 조사 및 관리
10. 취업상담 코너 운영
11. 취업정보 수집 및 제공
12. 취업 추천 및 선발
13. 학생 부직 알선 관리
14. 정부지원 취업지원사업 관리
15. 상시 진로지도 프로그램
16. 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

제2장 조직 및 직무

제3조(조직) ① 센터에 심리상담부와 취업 및 진로상담부 및 행정실을 둔다.

② 각 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.

1. 심리상담부는 학생들의 적응, 발달을 돕기 위한 신입생 인성검사 사업, 개인 심리검사 및 상담, 집단상담, 이성·결혼·성 상담 및 학생 생활 제반문제 조사연구 등을 기획하고 운영한다.
2. 취업 및 진로상담부는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 상담에 대한 업무를 기획하고 운영한다.
3. 센터 운영을 위하여 직원과 조교를 둘 수 있으며 그 업무는 학생과에서 수행한다.

제4조(센터장)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 관련지식을 가진 교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, 업무를 통할한다.

제5조(상담원) ① 센터에는 부센터장, 전임상담원과 협력상담원을 둘 수 있다.

② 전임상담원은 상담관련 자격증을 갖춘 전문인으로 한다.

③ 협력상담원은 상담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한다.

제6조(개인정보 보호) 센터의 교직원 및 상담원 등 구성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, 학생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7조(설치)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”라 한다.)를 둔다.

제8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

②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.

제9조(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 및 정책
2. 센터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3.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
4.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0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

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4장 재정 및 기타

제11조(재정) 센터의 재정은 대학 지원 예산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제12조(회계연도) 센터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에 준한다.

제13조(운영세칙)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학생생활연구소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) 본 학생상담·진로센터 설치에 따라 기존 학생생활연구소는 폐지하기로 하고 그 업무를 학생상담·진로센터에서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.